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는 한편,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8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①제2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삭제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다. (생략)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 6. 삭제 7. (생략) <신설> ② 삭제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의2. ----- -----. ---- 2025년 8월 31일----- -----. 4.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2025 년 12월 31일----- ----- 7. (현행과 같음) 8.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제2 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 3항의 개정규정은 <u>2025년 6월 3</u> <u>0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 ----- ----- <u>2025년 12월 3</u> <u>1일</u> -----.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 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 일부터 <u>2025년 6월 30일까지</u> 제 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 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 ----- ----- <u>2025년 12월 31일</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